

안전보건관리 유의서

1. 적용대상

본 문서는 공고번호 (학)일송학원 한강성심병원 제2022-04호 입찰건명 「한림대의료원(한강성심병원) 액화산소 저장탱크 구축공사」에 적용한다.

2. 적격 수급업체 평가 및 선정

가. 실시근거

- 1)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 2)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
- 3)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조치)

나. 제출방법

- 1) 제출기한 : 2022. 10. 18(화), 10:30까지
- 2) 제출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55
(도헌연구센터 4층 회의실)

다. 제출서류

- 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부.

※ 한림대학교한강성심병원 적격 수급업체 선정 기준 참고

3. 산업재해 예방활동

가. 도급공사 안전관리

- 1) 담당자는 수급업체에 도급공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및 위험성평가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공사 중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의 도급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에 계상한다. 또한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증빙하지 못하거나, 용도외 사용한 내역은 정산하여 감할 수 있다.
- 3) 위험 기계·장비 등을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 사전에 본원 담당자에게 통보하고, 안전감독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대상이 있는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 수급업체에 사전조사 결과 및 작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내용이 적합한지 확인 및 현장점검 시 확인할 수 있다.
- 5) 발주자가 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관련 건설현장 위험요인에 대한 지도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나. 안전보건협의체

- 1) 안전보건협의체는 총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및 상주 수급인에 대해 구성·운영하며,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건설공사인 경우에도 위험성을 고려하여 소관 수급인과 안전보건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2)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한다.

3) 한림대학교한강성심병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병원장)가 회의의 소집권자가 된다.

4) 안전보건협의체는 다음 사항을 협의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 제2항 각 호의 사항
- 수급인 간의 안전보건에 관한 협력방안
- 안전장치 및 시설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수급인 근로자 전체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다. 안전보건점검

1) 2일 1회 병원은 안전보건순회점검을 실시한다.

2) 분기 1회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하며 수급사의 현장관리자 및 직원 1명을 반드시 참석 시킨다.

3) 수급사는 발주처의 안전점검을 거부, 방해, 기피해서는 안되며, 점검결과 발주처의 시정요구가 있을 때는 시정하여야 한다.

4) 본원 안전관리자는 발주공사 단계별(발주·계약, 착공 전, 공사 중) 안전관리를 체크리스트를 통해 적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라. 안전보건교육

1) 공사 기간 중 매월 2시간 이상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도록 교육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2) 1개월 이상 근무해야 하는 건설 근로자의 경우 최초 작업 전 8시간 이상의 채용시교육을 진행하고, 1개월 미만으로 작업하는 건설 근로자의 경우 주 단위로 1시간 이상 진행하여야 한다. 단,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경우 제외할 수 있다.

- 3) 위험작업에 대해서는 특별안전보건교육을 16시간 실시해야 한다.

4. 일반작업 유의사항

가. 작업장 내에서 행동

- 1) 바닥에 위험물질이나 화학물질을 흘리지 않는다.
- 2) 공구 등 기타 물품을 던지고 받는 행위를 금한다.
- 3) 각종 표지판과 안전지침서를 숙지하고, 준수한다.
- 4) 공사 종료 시 까지 청소원을 상시 배치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현장을 항상 청결히 유지 관리한다.
- 5) 인화성, 발화성, 폭발성 기타 위험물질이나 유독물질은 용기에 내용물을 표시하여 지정된 장소에 보관
- 6) 소화기, 소화전, 출입구, 비상구 및 분배전반 위치 부근에는 물품을 두지 말아야 하며, 벽이나 창문, 기둥 등에 물품을 기대어 세워 두어서는 아니 된다.

나. 통로 및 통행

- 1) 통로 바닥은 평탄하여야 한다.
- 2) 통로 상에는 구멍, 하수구의 뚜껑, 맨홀, 볼트 등 통행에 방해가 되는 돌출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 3) 건물의 계단, 경사로 등은 미끄럼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한다.
- 4) 통로 상에는 어떤 것도 놓는 것을 금지한다.
- 5) 지정된 장소로만 통행하여야 한다.
- 6) 크고 무거운 물건을 들고 사다리나 계단을 오르내리지 않으며, 특히 사다리 이동 시에는 반드시 2인 1조로 이동한다.
- 7) 운반대차 등 기타 운반구를 타는 행동을 금지한다.

- 8) 가동 중인 기계 하부나 제품 및 적재된 롤 사이 또는 운반 중인 크레인 밑을 통행하지 말 것

다. 낙하물 등의 예방

- 1) 작업장의 바닥, 통로, 도로 등에서 낙하물에 의한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보호망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라. 복장 및 보호구 착용

- 1) 소매단추 및 앞 단추는 잠그고, 옷자락을 늘어뜨리지 않는다.
- 2) 복장은 항상 청결하고 훼손된 곳은 보수하여 착용한다.
- 3) 날, 공작물 또는 축이 회전하는 기계기구를 취급하는 때에는 손에 밀착이 잘되는 가죽장갑 등 이외에 손이 말려 들어갈 위험이 있는 장갑을 사용하지 못한다.
- 4) 위험작업 장소에서는 반드시 안전화와 안전모를 착용한다.
- 5) 미분, 칩, 기타 비산물이 발생하는 절단, 연삭, 기계가공 등의 작업에는 보안경을 착용하여야 한다.
- 6) 화공약품 취급 작업 시에는 보안경, 내산장갑, 앞치마 등을 착용한다.
- 7) 인체에 해로운 가스, 증기, 미스트, 흠 또는 분진 발생장소에는 방독이나 방진마스크를 착용한다.
- 8) 85(dB)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장에는 귀마개 또는 귀덮개를 착용해야 한다.
- 9) 칩, 증기, 유해물질 등의 비산으로 얼굴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작업수행 시에는 보안면 등의 안면보호구를 착용한다.

라. 안전보건게시물 관리

- 1) 작업장소 내 산업안전보건법 요지를 게시해야 한다.
- 2) 위험장소에는 재해예방을 위해 안전표지를 게시해야 한다.

5. 전기작업 유의사항

가. 전기안전에 관한 사항

- 1) 면허를 필요로 하는 전기작업은 면허소지자 외에 작업을 금한다.
- 2) 전기고장을 발견하면 즉시 본원 담당자에게 보고한다.
- 3) 전기장치에 스파크나 연기가 나면 전기를 끄고 보고한다.
- 4) 전선 또는 전기 기구에 물건을 걸어두지 않는다.
- 5) 활선작업 시에는 감독자를 배치하고, 2인 이상이 작업한다.
- 6) 전류가 흐르고 있는 전기 부근이나 그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해당 전기기기에 안전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 7) 원내 차단기나 안전 스위치를 함부로 손대지 않는다.
- 8) 사용하지 않는 전기기구는 전원을 차단하여 둔다.

나. 전기작업에 관한 사항

- 1) 모든 전기작업 시에는 전격(감전)에 대한 보호구, 접지 등 감전사고예방 방호조치가 확보되도록 한다.
- 2) 활선작업 시 또는 정전작업 중 타인이 전원 스위치를 투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스위치에는 '조작금지' 표지판을 반드시 부착한다.
- 3) 임시배선은 가급적 지양하고, 부득이하게 연결 시에는 연결부를 절연 테이프로 감아둘 것
- 4) 전기 기구류는 전원 용량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 5) 비오는 날에는 옥외에서 전기작업을 하지 않는다.
- 6) 정전작업 시에는 전로의 개로 개폐기에 시건장치 및 통전금지 표지판을 설치한다.
- 7) 정전작업 시에는 단락 접지기구를 사용하여 단락 접지한다.

6. 기계안전 유의사항

가. 기계작업에 관한 사항

- 1) 본인담당 이외의 기계는 손을 대지 않는다.
- 2) 기계의 가동은 각 작업자의 위치와 안전장치의 적정 여부를 확인한 다음 가동한다.
- 3) 정전이 되면 우선 스위치를 내린다.
- 4) 작동하는 기계는 정비작업을 하지 않는다.
- 5) 가동 중인 기계는 점검 및 청소하지 않는다. 정지 시에도 청소는 브러시나 기타 치구를 사용한다.
- 6) 기계기구 등의 수리, 정비 등의 작업 시에는 수리 혹은 정비 중 등의 표지판을 기계 조작반에 설치하여야 한다.
- 7) 회전체에는 함부로 손을 대지 않는다.
- 8) 비회전체에 가공물을 물려 작업하는 데에는 면장갑을 착용하지 않는다.
- 9) 비 작업종료 후에는 반드시 기계의 부속기구 등을 정해진 위치에 둔다.

나. 공구사용에 관한 사항

- 1) 공구를 전달할 때 던지거나 밀지 않는다.
- 2) 사용 후 반드시 보관함에 넣어 둔다.
- 3) 끝이 예리한 수공구는 반드시 덮개나 칼집에 넣어서 보관 이동한다.
- 4) 파편이 튈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보안경을 착용한다.
- 5) 각 수공구는 일정한 용도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 6) 올바른 공구를 사용하고, 임시적인 공구는 사용하지 않는다.

다. 중량물 취급 작업에 관한 사항

- 1) 운반할 물건의 크기와 무게를 살펴보고 형상에 따라 안전한 작업방법을 택한다.
- 2) 작업할 때는 규정에 맞는 작업복 및 보호구를 몸에 밀착되게 착용한다.
- 3) 운반중량은 조건, 화물의 형상, 성별, 연령 등 조건에 따라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작업한다.
- 4) 중량물을 잡는 방법 및 자세와 순서를 충분히 훈련하여 몸에 배도록 한다.
- 5) 혼자 운반하기 어려운 경우 2인 이상이나 운반보조기구를 활용한다.
- 6) 여러 명이 운반할 경우에는 작업환경에 적절한 신호방법을 지정 및 준수한다.

7. 유해위험물질 유의사항

가. 유해물질 유의사항

- 1) 유해물질은 정해진 장소와 용기에 격납하여야 한다.
- 2) 유해물질은 지정된 표시를 하여야 한다.
- 3) 관계자 이외 취급 작업장 출입을 금한다.
- 4) 작업장 내에서는 금연 금식을 한다.

나. 위험물질 저장소 유의사항

- 1) 저장소에서 화기 및 인화물질 취급을 엄금한다.
- 2) 취급시 용기의 전도·전락, 충격을 피한다.
- 3) 정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4) 허가량 이상 저장하지 않는다.

다. 위험물질 취급 시 유의사항

- 1) MSDS를 구비하여 위험물품을 처리, 운송, 사용하는 근거가 되도록 한다.
- 2) 보호구를 준비한다.
- 3) 원내에서 폐기처분하지 않는다.
- 4) 국부 지역에 누출 시 경고 표지와 지역 내 출입금지 조치하며 신속히 본원 담당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 5) 광역 지역에 누출 시 신속히 본원 담당자에게 전화연락 하여 조치에 관한 지시를 받는다.
- 6) 위험정도가 경미하면 보호구 착용 후 비상조치 한다.

8. 화재예방 유의사항

- 1) 금연구역 내에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 2) 가연성 쓰레기 등은 금속용기에 모아 버려야 하며, 보관 시 뚜껑을 덮을 것
- 3) 소화기의 점검을 철저히 하고, 사용 시에는 보충한다.
- 4) 소방호스와 소화전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5) 화기사용 후에는 반드시 소화상태를 확인한다.
- 6) 하수구에는 절대로 유류를 버리지 않는다.
- 7) 페인트 작업시에는 특히 화기에 주의해야 한다.
- 8) 사무실 등에 자리를 비울 때에는 전원을 끈다.
- 9) 승인되지 않은 전열기구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필요 시 본원 전기실 승인신청서를 제출 한 후 반입하여 사용한다.
- 10) 화기를 취급 시에는 사전에 발주처의 허가를 득한 후 진행 하여야 한다.

한림대학교한강성심병원 적격 수급업체 선정기준

1. 시행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른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2. 평가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실시하는 경우로 본원 내 작업을 말한다.
- 적격 수급업체 선정은 계약 금액에 상관없이 상기 기준에 충족 시 모두 적용된다.
- 평가제외 대상
 - ① 안전보건 관련 기술용역 : 건강검진, 작업환경측정, 소방점검 등
 - ※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점검은 해당(비상발전기 점검, 승강기 점검 등)
 - ② 본원 내에서 실시하지 않은 도급·용역·위탁 업무 등
 - ③ 본원에 방문하여 단순 납품만 실시하는 업체
 - ※ 단, 납품 후 추가적인 업무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 평가대상
 - 예시1) 본원 내 의료용 가스를 납품하고 교체 작업까지 실시하는 경우
 - 예시2) 본원 내 의료기기를 납품하고 설치 작업까지 실시하는 경우
 - 예시3) 본원에서 사용하는 기계기구 고장 시 원내 방문하여 수리하는 경우
 - 예시4) 본원 내 CCTV를 납품하고 설치 작업 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3. 평가방법

평가방법	대 상	제출서류
정식평가	입찰	[붙임3]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약식평가	비입찰	[붙임4]안전보건수준조사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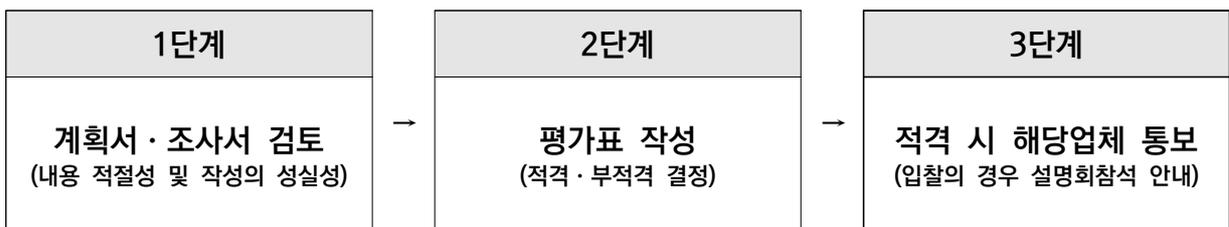
4. 평가절차

- 계약에 따른 평가 절차

입찰계약	비입찰계약
본원 입찰 공고 (적격 수급업체 선정기준 공지)	계획서 제출 요청
사업(현장)설명회 (부적격 업체 참석불가)	적격 수급업체 평가 및 선정 [붙임 4] 안전보건수준조사서 제출
투찰	평가결과(적격·부적격) 통보
적격 수급업체 평가 및 선정 [붙임 3]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도급·용역·위탁 진행
개찰 및 낙찰자 선정	
도급·용역·위탁 계약 체결	

- 계약서에 따라 자동 연장이 되는 도급·용역·위탁의 경우 연장기간 이전 재평가 실시
- 별도의 계약서 작성이 없는 도급·용역·위탁 경우 매년 초 재평가 실시
- 당해 연도에 자체적으로 수립한 안전보건계획 문서가 있는 경우 해당자료 제출가능
단, 계획서에는 [붙임 1]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상 평가기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확인이 어려울 경우 해당 내용을 평가할 수 있도록 별도 제출 필요
- 본원에서 실시하지 않고 재단에서 실시하는 입찰·계약의 경우 평가절차 제외

- 적격 수급업체 선정 세부평가 절차



5. 평가기준

· 작업별 적격기준

작업구분	도급·용역·위탁 내용	적격기준
고위험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지보수관리, 원내건설공사 · 건설기계 운반(의료기기 이동 등) · 밀폐공간 출입(물탱크 청소 등) · 고소작업, 전기작업, 화재작업, 화기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격 : 최우수 · 부적격 : 최우수 미만 등급
위험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원 내 상주하는 협력사 전체 · 유해·위험물질 취급 작업, 중량물 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격 : 우수 이상 · 부적격 : 보통 이하 등급
일반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내 인력 파견업체 전체 · 작업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격 : 보통 이상 · 부적격 : 주의 이하 등급
저위험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작업 이상의 도급·용역·위탁 내용을 제외한 재해발생 위험이 거의 없는 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격 : 주의 이상 · 부적격 : 불량 등급

· 평가등급 기준

평가등급	평가점수	평가
최우수	80점 이상~100점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작업 도급·용역·위탁 가능 · 안전·보건관리 능력이 매우 우수하여 산업재해예방 활동 철저히 이행 가능
우수	60점 이상~80점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위험작업 도급·용역·위탁 가능 · 안전·보건관리 경험이 있으며 자율적인 산업재해 예방 활동 가능
보통	50점 이상~60점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작업에 대해 도급·용역·위탁 가능 · 안전·보건관리 경험과 지식이 다소 부족하며 위험작업 이상 작업 시 재해발생 우려
주의	40점 이상~50점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위험작업 도급·용역·위탁 가능 · 안전·보건관리 경험과 지식이 부족하며 일반작업 이상 작업 시 재해발생 우려
불량	40점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불가 · 안전·보건관리 경험과 지식이 매우 낮으며 도급·용역·위탁 시 재해발생 가능성이 높음

도급·용역·위탁 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

- 업체명: _____ □ 평가일: _____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 기준	배점	점수
A. 안전보건관리체계	도급·용역·위탁받는 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수준	40	
- 리더십	- 경영방침, 인력·시설·장비 등 자원 배정의 적성성	10	
- 근로자 참여	- 종사자 의견수렴 절차 이행 적정성	10	
- 위험요인 파악 및 제거 대체 통제	- 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절차 및 수준의 적정성	10	
- 비상조치계획	- 비상조치계획 적성성	10	
B. 도급·용역·위탁 안전보건관리계획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 적정성	60	
- 위험요인 파악 및 제거 대체 통제	-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 및 제거·대체·통제 방법의 적정성 (위험성평가 및 대책의 적성성)	15	
- 자원배정(시설장비)	-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의 위험요인 관리에 적합한 시설·장비 배정 및 운영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15	
- 자원배정(인력장비)	-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의 위험요인 관리에 적합한 인력 배정 및 운영 -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15	
- 비상조치계획	-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 시 발생 가능한 비상상황 및 대처에 적합한 비상조치계획	15	
총 점		100	

□ 평가결과

평가 등급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평가자	부서명	(서명)
	적격[] 부적격[]		이름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배점 기준

문항	문항내용	상	중	하
A-1	[안전보건관리체계-리더십] 경영방침, 인력 시설 장비 등 자원 배정의 적정성	10	5	1

평가결과	평가기준
상	안전보건경영방침이나 목표가 설정되어 있으며, 예산 집행 계획이 있다.
중	안전보건경영방침이나 목표 및 예산 집행 계획 관련 일부가 누락되어 있다.
하	안전보건경영방침이나 목표 및 예산 집행 계획을 확인할 수 없다.

문항	문항내용	상	중	하
A-2	[안전보건관리체계-근로자 참여] 종사자 의견수렴 절차 및 이행 적정성	10	5	1

평가결과	평가기준
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안전보건협의체를 내부적으로 운영한다. 위 대상이 아닐 경우 별도의 안전보건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구축하였다. ex) 매월 안전보건관련 회의 진행, 안전보건 건의함 설치 등
중	종사자 의견수렴 계획을 수립하였지만 별도의 회의나 도구를 사용하지 않아 의견 수렴의 방법이 미흡하다
하	안전보건관련 종사자 의견수렴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

문항	문항내용	상	중	하
A-3	[안전보건관리체계-위험요인관리] 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절차 수준의 적정성	10	5	1

평가결과	평가기준
상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점검, 개선계획 관련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다.
중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점검, 개선계획 관련 일부 담당자가 누락되어 있다.
하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점검, 개선계획을 확인할 수 없다.

문항	문항내용	상	중	하
A-4	[안전보건관리체계-비상조치계획] 비상조치계획 적정성	10	5	1

평가결과	평가기준
상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였으며, 근로자 대피 계획 수립하였다.
중	비상연락망 구축이 부실하여 신속대응이 어려우며, 대피 계획이 누락되어있다.
하	비상연락망 및 근로자 대피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없다.

문항	문항내용	상	중	하
B-1	[안전보건관리계획-위험요인관리] 위험성평가 및 대책의 적정성	15	7	3

평가결과	평가기준
상	최초/정기/수시 위험성평가 관련 평가시기 및 개선계획을 수립하였다.
중	위험성평가 운영 및 개선계획 수립이 일부 누락되어 있다.
하	위험성평가 관련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

문항	문항내용	상	중	하
B-2	[안전보건관리계획-자원배정(장비)]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15	7	3

평가결과	평가기준
상	기계·기구·설비 점검 계획 및 개선조치 등 관리계획을 적정하게 수립하였다.
중	기계·기구·설비 점검 계획 또는 개선조치 등 관리계획 일부가 누락되었다.
하	기계·기구·설비 점검 계획 및 관리계획이 적정하지 않거나 확인할 수 없다.

문항	문항내용	상	중	하
B-3	[안전보건관리계획-자원배정(인력)] 업무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15	7	3

평가결과	평가기준
상	병원관련 실적이 있으며, 해당 작업 및 안전보건관련 인력이 적정하다
중	병원관련 실적은 없지만 타 업종 업무 실적이 있으며, 인력이 적정하다.
하	실적 및 인력이 적정하지 않거나 확인할 수 없다.

문항	문항내용	상	중	하
B-4	[안전보건관리계획-비상조치계획] 비상상황 및 대처에 적합한 비상조치계획	15	7	3

평가결과	평가기준
상	연락방법·체계 구축, 조치절차에 근로자 작업즉시중지 사항 포함되어 있다.
중	연락방법·체계 구축했지만 조치절차에 근로자 작업즉시중지가 누락되어 있다.
하	연락방법·체계 및 근로자 작업즉시중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없다.

도급 · 용역 · 위탁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항에 따라 도급사업 시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해 귀사의 안전보건 관리수준을 평가하여야 하며, 성실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업체정보			
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소재지			
작성자/직위		연락처	
주요실적	(병원관련 경력 없을 시 타 업종 경력 기입)		

□ 안전보건 리더십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						
자원 배정	예산 수립	구 분	내 용			금 액
		건강관리비				
		소모품비				
		위험성개선				
		기 타				
	합 계					
	인력 운영	구 분	이 름	직 급	자격사항	비 고
장비 운영	장비명	용 도	수 량	관리계획	비 고	

□ 유해위험요인 관리계획				
교육계획 (안전의식고취)	구 분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강사
	정기교육	월 2시간	시행규칙 별표5 1항가목	
	채용시의교육	8시간	시행규칙 별표5 1항다목	
	작업변경교육	2시간	시행규칙 별표5 1항다목	
	특별안전보건교육	16시간	시행규칙 별표5 1항라목	
의견수렴계획 (근로자 의견청취)	구 분	수렴주기	수렴내용	담당자
점검계획 (유해위험요인파악)	구 분	점검주기	점검방법	점검자
	기계기구설비 점검	작업시작 전	육안점검	
	복장/보호구 착용상태	작업시작 전	육안점검	
	방호장치 설치상태	작업시작 전	육안점검	
	작업장 정리정돈 상태	작업시작 전	육안점검	
	최초위험성평가	최초 사업 시	육안점검,의견청취	
	정기위험성평가	년 1회	육안점검,의견청취	
	수시위험성평가	재해발생 시	육안점검,의견청취	
개선계획 (유해위험요인제거)	구 분	조치시기	조치사항	담당자
	개인보호구	업무시작 전	안전화,안전모 지급	
	안전보건표지	상 시	법적 표지 부착	
	물질안전보건자료	상 시	MSDS 현장 비치	
	기계기구 방호장치	발생 시	안전장치 설치	
	위험성개선	평가 시	위험성평가 후 개선	

